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함영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9
----------	------

제출년월일 : 2012. 11. 20.

제 출 자 : 함영미, 윤미라, 한갑수 의원
(3명)

1. 제정배경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방향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마. 자살예방·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할 시 심의하기 별도의 심의 기구를 두기보다는 안산시 정신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바. 자살방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마.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 사.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③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안산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교육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안산시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시책 사업의 심의)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상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신보건사업 및 생명존중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